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김귀영* · 이대인** · 전경암*** · 엄기혁*** · 우영석****

*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국토해양부

Diagnosis for Review of Statement and System Improvement of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in Korea

Gui-Young Kim* · Dae-In Lee** · Kyeong-Am Jeon*** · Ki-Hyuk Eom*** · Young-Seok Woo****

* , **, ***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enter,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Busan, 619-705, Korea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Gwacheon, 427-712, Korea

요약 :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 등급 또는 II 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범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해역이용협의, 검토현황, 연안이용, 공유수면,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Abstract : The review of statements and coast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were diagnosed by the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in Korea. The occupation and the use of public water were dominated by installation of coastal structure and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whereas the reclamation areas were predominantly utilized for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 harbor, fishing port and road. The occupation and the use were dominant in western coast, but reclamation was dominant in southern coast of Korea. The number of utilization cases was particularly greater in Jeonnam, Gyeongnam, and Gyeonggi Province including Incheon. The number of the statements reviews increased by more than 200 cases in 2008 compared with 2007, and most of them were the simple statements. The statements related to ocean disposal of dredged sediment, reclamation, dredging sediment,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and marine sand mining were submitted for review. Coastal utilization was especially active in the regions of seawater quality criteria I and II. In particular,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designated under the relevant marine regulations were utilized mostly by reclamation for developing harbor, fishing port and coastal structure. Development activities in national parks comprised primarily structure installation and coastal maintenance. In the fisheries resources protection areas, 40% of the total cases accounted for coastal maintenance, 31% for structure installation, and 16% for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In addition, alternative plans for the improvement in policies and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function and confidence of the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in Korea.

Key words :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Review of statement, Coastal utilization, Public Wate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mprovement

1. 서 론

연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과 이용계획의 증가에 따라서 해양환경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심각한 피해를 미쳐 이해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연안이용방안과 적절한 보전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2009e)에 의하면 전국 연안의 약 5%가 양식장, 항만·어항 및 점·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개발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한 해역이용협의제도

** 교신저자 : 정희원, dilee@nfrdi.go.kr, 051-720-2961

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이하 해역이용협의 등)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8a). 해역이용협의제도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매립, 어업과 바다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보다 규모와 영향정도가 큰 이용행위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준설로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 채취단지의 지정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국토해양부 주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이 등, 2008c). 이러한 해역이용협의 등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에 관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면서 그 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해양오염방지법」의 해역이용협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제도 운영에 대한 훈령과 협의서 및 평가서의 작성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8b; 국토해양부, 2008c; 국토해양부, 2008d).

그러나 비록 이 제도가 시행 초기보다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부족하고, 일부 연안이용에 대한 협의대상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협의서의 평가·작성과정 및 다른 제도와의 연관성에 다소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관련 법률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연안이용행위는 크게 공유수면 점·사용과 공유수면 매립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규모와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른 협의절차, 평가내용 및 사후관리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협의·검토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갈등요소가 내재된 사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평가사업으로 구분해서 보다 엄밀하게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해역별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사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부하 측면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위적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벽하게 평가·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나, 최소한의 합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사업자 주체주의의 환경평가제도에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양환경특성을 가진 연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별로 평가와 검토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과, 그리고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과 행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공유수면을 이용·계획할 때 거쳐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유형에 대한 정보생산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안이용의 압력과 강도에 대한 실태를 제공할 수 있고, Top-down 관점에서 광역-

지역간 연안이용정보를 연계시켜 해양의 적정 공간계획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과 검토과정에서 사업지역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와 누적영향효과 및 유사행위에 따른 평가와 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2009e)는 「연안관리법」 제4조에 의해 연안관리정책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안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이 등(2008a)은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수행한 2007년의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해역이용협의서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춘 사전진단적 성격의 연안이용정보를 분석했으나, 공식적 협의제도 시행이후의 체계적 연안이용구분에 따른 사업형태와 연안공간별 및 협의기관별 정보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08년 이후의 좀 더 폭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론적인 선행연구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검토유형과 연안이용특성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연안해역의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관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이 두 가지 법에 의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기관이 국토해양부로 협의하고, 협의기관에서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으로 검토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협의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후의 연안해역의 이용정보 및 개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으로 검토요청된 총 691건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자료를 통계분류하고 그 전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안해역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자료는 해역이용협의와의 중복성과 순수한 공유수면에서의 이용자료 도출을 위해서 제외하였다. 또한, 협의 및 검토과정에서 동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해역이용행위 검토유형 구분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용·개발행위는 매우 다양해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는 것 보다 행위의 목적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고려해서 몇 개의 범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공유수면을 일정한 기간동안 점·사용하는 형태와 복원이 힘든 매립하는 형태로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major review types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Classification	Review types of coastal use and development	No.
Public Water Occupation and Use	Dredging and drilling sediment	①
	Sand and mineral mining	②
	Ocean disposal of dredged sediment and land-based wastes	③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④
	Coastal structure installation (including harbor and fishing port facilities)	⑤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⑥
	Fishing licence, fishing facilities installation	⑦
	Research for marine environment	⑧
	Shore protection	⑨
	Extend of period	⑩
Public Water Reclamation	Construction of harbor and fishing port	①
	Creation of tidal flat	②
	Creation of agriculture, industry and commerce complex	③
	Building of tourism and leisure site	④
	Road construction	⑤
	Power plant and facility construction	⑥
	Multiple towns and cities construction	⑦
	Building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⑧
	Coastal maintenance (erosion reduction)	⑨
	Small-area (below 1,000m ²) reclamation	⑩

구분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유형은 「공유수면관리법」에 11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고,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매립목적에 따라 17개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해역이용 협의제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주 검토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의대상사업과 실제적으로 협의되는 사업형태를 분석해서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점·사용부분에서는 행위목적에 따라 준설, 해사·광물 채취, 투기, 자원개발, 공작물설치, 해수 인배수, 호안정비, 어업관련행위 및 기간연장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매립부분의 주 검토유형은 항만·여항, 산업단지, 관광시설, 도로, 도시건설 목적과 연안정비 및 소규모매립(규모 1,000m² 이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만·여항구역 등 사업지역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별 행위시 협의절차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진단을 선행해야 하고, 협의대상사업으로 누락된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진단해석과 규정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누락사항 발생은 협의대상을 미리 정하고 있는 제도체계(Positive list)의 한계로서 세밀한 보완과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스크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바다골재채취, 매립, 준설과 투기 등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점사업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법령상 규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3.2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에 따른 연안이용 분석

3.2.1 대상사업별 유형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은 공유수면 매립(약 34%)보다 공유수면 점·사용이 약 66%로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1). 이러한 결과는 이 등(2008a)의 2007년 자료(공유수면 매립 약 3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유수면 점·사용 형태별로는 공작물설치가 약 51%로 대부분을 차지하여(이 중 항만·여항에서의 비율은 약 2.6%) 다양한 구조물과 시설들의 설치와 관련한 협의가 주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육상양식장 등 수산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해수 인배수가 약 20.3%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공작물설치는 점·사용허가 건수의 58.7%, 면적으로는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9e). 그 밖에 호안정비 6.5%, 모래를 포함한 광물채취 5.4%, 준설 4.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점·사용면적은 약 40km²로 점·사용료는 약 20,37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해마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국토해양부, 2009e).

공유수면 매립에서는 조선소와 농공단지 등 공장부지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28.4%로 가장 컸으며, 항만과 여항에서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립이 24.6%, 도로건설이 10.3%, 관광레저가 4.3%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대부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승인된 사항으로 추진되었으며, 매립규모가 1,000m² 이하로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무관한 소규모매립은 약 22%로 나타나서 매립과 관련한 해역이용협의는 대부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그 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70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사업지구 총 751개소 중 매립목적으로는 항만시설용지가 26.5%, 중간재가공공장 13.3%, 여항시설용지 12.4, 공공용지 1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9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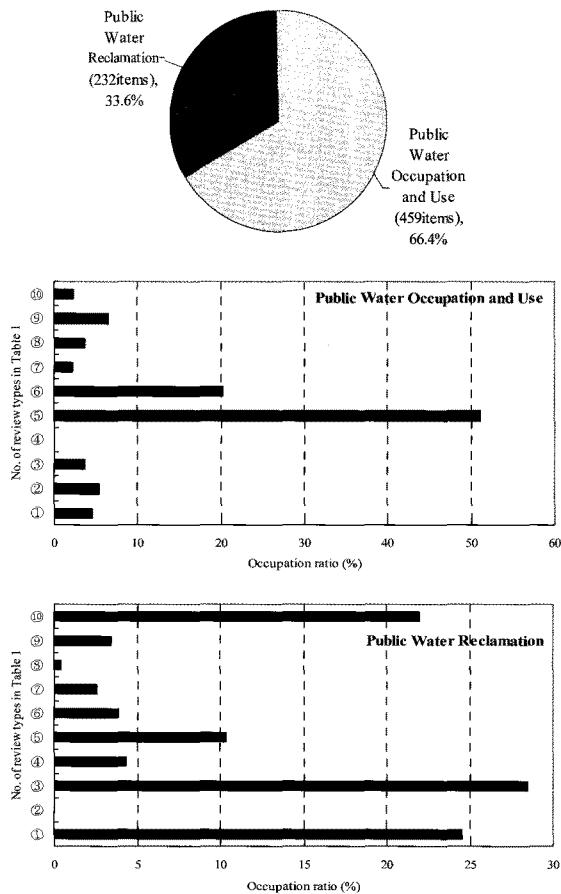


Fig. 1. Review types of use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3.2.2 해역별 유형

해역별 구분은 남해의 경계를 해남에서 울산까지로 하고, 해남 북쪽은 서해, 울산 북쪽은 동해로 구분하였다. 사업지역은 서해가 52.8%, 남해가 38.8%, 동해가 5.5%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 서해와 남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러한 분포는 2007년의 분석결과(남해 52%, 서해 37%, 동해 11%)와 비교하면, 남해와 동해지역의 비율은 감소하고 서해에서는 증가하였다.

해역별로 연안이용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동해에서는 항만·어항에서의 매립이 31.6%가 가장 많았고, 공작물설치 15.8%, 도로건설 13.2%, 광물채취 10.5%, 해수사용과 소규모매립이 7.9%로 나타났고, 남해에서는 공작물설치가 22.8%로 최대, 산업단지조성이 20.1%, 해수사용, 소규모매립, 항만·어항에서의 매립, 도로건설이 각각 19%, 11.9%, 6%, 5.6%를 나타내었으며, 서해에서는 공작물설치가 45.8%로 가장 커 해수사용, 항만·어항에서의 매립, 연안정비와 광물채취가 각각 11%, 8.2%, 7.4%, 4.7%를 보였다. 한편, EEZ에서는 투기에 관한 협의가 85%로 가장 건수가 많았으며, 끌재채취는 1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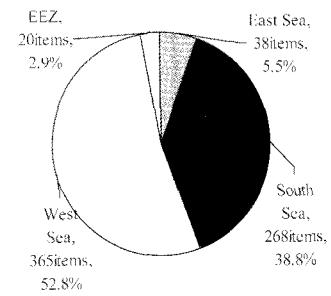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review case of sea area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Table 2. The occupation ratio of review types and sea area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Classification no. of Table 1	Occupation ratio (%)			
	East Sea	South Sea	West Sea	EEZ
Public water occupation and use	① 5.3 (9.5)	3.7 (47.6)	2.5 (42.9)	0.0 (0.0)
	② 10.5 (16.0)	0.4 (4.0)	4.7 (68.0)	15.0 (12.0)
	③ 0.0 (0.0)	0.4 (5.6)	0.0 (0.0)	85.0 (94.4)
	⑤ 15.8 (2.6)	22.8 (26.1)	45.8 (71.4)	0.0 (0.0)
	⑥ 7.9 (3.2)	19.0 (54.3)	11.0 (42.6)	0.0 (0.0)
	⑦ 0.0 (0.0)	0.4 (10.0)	2.5 (90.0)	0.0 (0.0)
	⑧ 0.0 (0.0)	0.4 (6.3)	4.1 (93.8)	0.0 (0.0)
	⑨ 0.0 (0.0)	1.1 (10.0)	7.4 (90.0)	0.0 (0.0)
	⑩ 0.0 (0.0)	0.7 (18.2)	2.5 (81.8)	0.0 (0.0)
	① 31.6 (20.7)	6.0 (27.6)	8.2 (51.7)	0.0 (0.0)
Public water reclamation	③ 0.0 (0.0)	20.1 (84.4)	2.7 (15.6)	0.0 (0.0)
	④ 0.0 (0.0)	2.2 (66.7)	0.8 (33.3)	0.0 (0.0)
	⑤ 13.2 (20.8)	5.6 (62.5)	1.1 (16.7)	0.0 (0.0)
	⑥ 5.3 (20.0)	1.1 (30.0)	1.4 (50.0)	0.0 (0.0)
	⑦ 0.0 (0.0)	1.9 (83.3)	0.3 (16.7)	0.0 (0.0)
	⑧ 0.0 (0.0)	0.4 (100.0)	0.0 (0.0)	0.0 (0.0)
	⑨ 2.6 (11.1)	1.9 (55.6)	0.8 (33.3)	0.0 (0.0)
	⑩ 7.9 (5.9)	11.9 (62.7)	4.4 (31.4)	0.0 (0.0)

(): occupation ratio of sea area

각 행위에 대한 해역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첨·사용에서 준설은 남해와 서해에서 각각 47.6%와 42.9%, 끌재채취는 서해에서 68%, 투기는 EEZ에서 94.4%, 공작물설치는 서해에서 71.4%, 해수사용은 남해에서 54.3%, 연안정비는 서해에서 90.0%, 어업이용과 기간연장은 서해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유수면 매립에서 항만·어항 개발은 서해에서 51.7%, 산업단지조성은 대규모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전남과 울산을 중심으로 남해에서 84.4%, 관광레저이용은 남해에서 66.7%, 도로건설은 남해에서 62.5%, 도시개발은 남해에서 83.3%, 연안정비는 남해에서 55.6%, 소규모 매립은 남해에서 62.7%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공유수면·첨·사용은 서해에서 매립은 남해에서 지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970년대 이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서도 반영사업지구 중 경남이 24%, 전남이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9e).

3.2.3 행정구역별 분석

해역이용협의 사업지역을 행정구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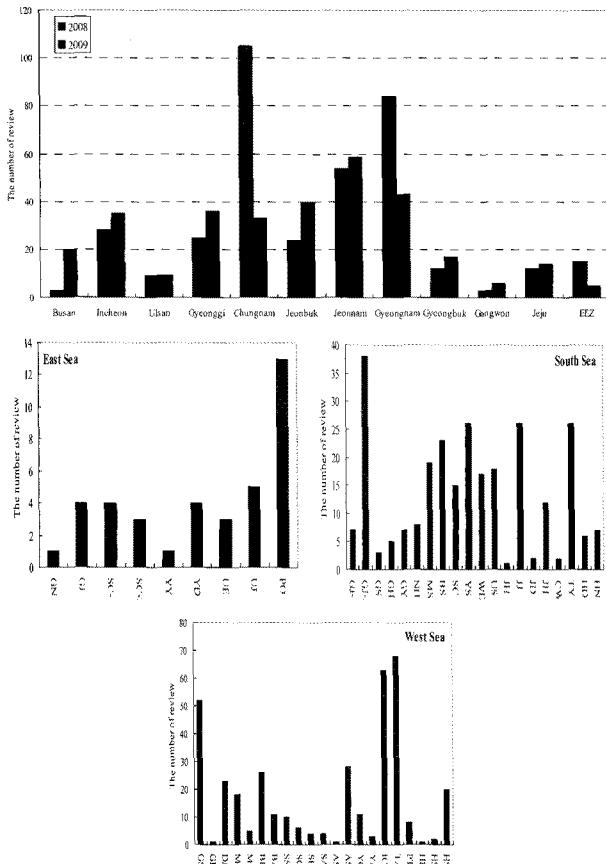


Fig. 3. The number of review case of administrational region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East Sea(GN: Gangneung, GJ: Gyeongju, SC-1: Samchok, SC-2: Sokcho, YY: Yangyang, YD: Yeongdeok, UE: Ulleung, UJ: Uljin, PH: Pohang), South Sea(GJ-1: Gangjin, GJ-2: Geoje, GS: Goseong, GH: Goheung, GY: Gwangyang, NH: Namhae, MS: Masan, BS: Busan, SC: Sacheon, YS: Yeosu, WD: Wando, US: Ulsan, JH: Jangheung, JJ: Jeju, JD: Jindo, CW: Changwon, TY: Tongyeong, HD: Hadong, HN: Haenam). West Sea(GS: Gunsan, GP: Gimpo, DJ: Dangjin, MP: Mokpo, MA: Muan, BR: Boryeong, BA: Buan, SS: Seosan, SC: Seocheon, SH: Sihewung, SA: Shinan, AS-1: Asan, AS-2: Ansan, YG: Yeonggwang, YA: Yeongam, IC: Incheon, PT: Pyeongtaek, HP: Hampyeong, HS-1: Hongseong, HS-2: Hwaseong).

충남, 경남과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2008년에는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각각 105건, 84건, 54건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 9월까지는 전남지역이 59건으로 가장 컸으며, 경남, 전북, 경기와 인천지역이 각각 43건, 40건, 36건과 35건으로 나타나서 2008년도와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별 해역이용협의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과 간이해역이용협의는 2009년 이후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협의기관별로 검토기관으로 검토요청하는 비율이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경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에서는 포항지역이, 남해에서는 거제, 통영, 여수, 제주, 부산과 마산지역이, 그리고 서해에서는 태안, 인천과 군산지역이 상대적으로 협의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2.4 협의서 및 평가서 유형별 분석

해역이용협의서는 간이와 일반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간이해역이용협의) 협의서 작성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있고, 검토단계에서도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비해 기본사항만 체크하고 대부분 사후관리대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Fig. 4와 같이 일반보다 간이해역이용협의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간이의 비율이 74.5%, 2009년에는 62.6%로 10%이상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해역이용협의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간이부분을 협의기관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어서 검토기관으로 요청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2009년에도 간이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제도상의 대상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행위에 대해서는 간이부분으로 해석해서 협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견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간이해역이용협의서의 대부분이 과학적 전문검토영역과 현지실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고, 관할 협의기관이 검토기관보다 지역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기간연장과 같은 단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에서 검토해서 처분기관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과 시간경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역이용협의기관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2008년 2건에서 2009년 7건으로 검토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한 협의로서 본안 및 보완검토 사항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진사업은 3건으로 나타나서 일 년에 해역이용영향 평가 대상사업이 매우 적어 평가대행기관의 등록 및 실적에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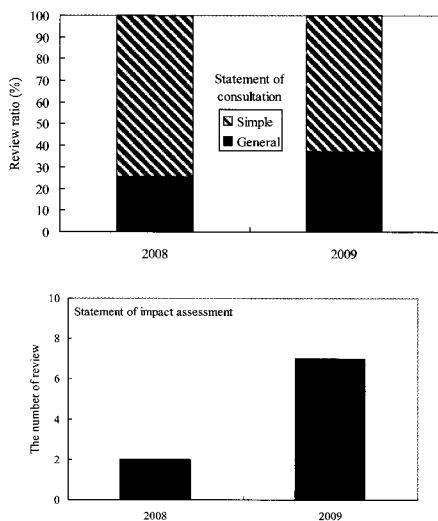


Fig. 4. The number of review case of statements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연안이용 행위별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주요 보완요청된 건수를 살펴보면(Fig. 5), 준설토 해양투기와 연안매립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안준설과 해수 인배수가 3건, 그리고 바다풀재채취와 규사채취가 2건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행위는 규정에 의거한 평가내용 및 협의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보다 엄밀한 평가와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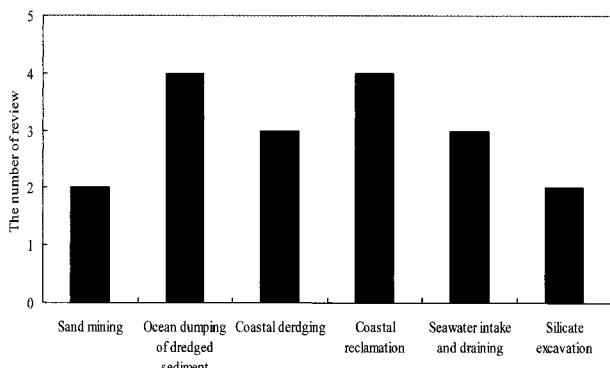


Fig. 5. The number of request for statement revision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3.2.5 해역이용협의기관별 검토요청건수 분석

해역이용협의기관별 검토의뢰 건수를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2008년의 경우 대산청 93건, 마산청 73건, 국토해양부(본부) 58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동해청은 2건으로 가장 낮았다. 2009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본부)에서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청, 목포청, 인천청, 평택청이 30건-3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검토의뢰수가 많은 것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과 관련한 검토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2008년에 비해 마산청과 대산청의 검토요청수가

대폭 낮아진 것은 간이해역이용협의의 검토의뢰가 감소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동해를 관할하는 협의기관의 검토요청 비율이 낮은 것도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산청에 포함된 제주해양관리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수 인배수와 관련한 검토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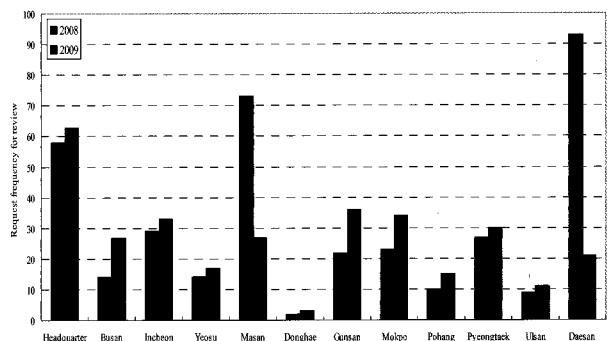


Fig. 6. The number of request to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or review of statements.

3.2.6 해역이용행위 지역별 해양환경기준 설정과 규제지역 이용현황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설정된 해양환경수질 기준과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Fig. 7에 제시하였다. 대부분 I 등급 또는 II 등급의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점·사용 형태가 우세하였다. 매립은 II 등급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I 등급 지역에서 연안이용형태가 많아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동시에 적정 목표수질기준의 현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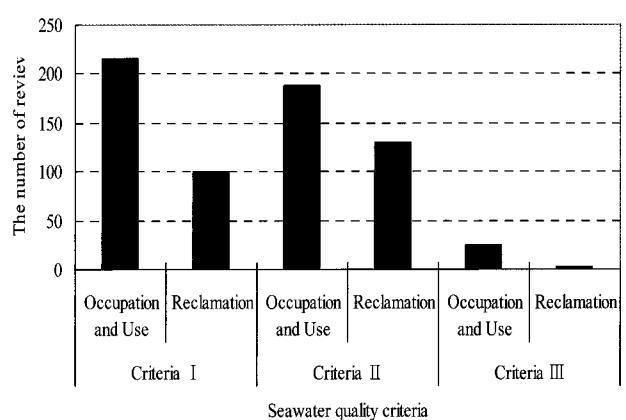


Fig. 7.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eawater quality criteria according to the utility type of coastal area.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에서의 연안이용 분석결과(Fig. 8), 특별관리해역에서 9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시화호·인천 연안이 43건을 차지하여 지배적이었고, 마산만, 부산연안, 광

양만, 울산연안은 12-15건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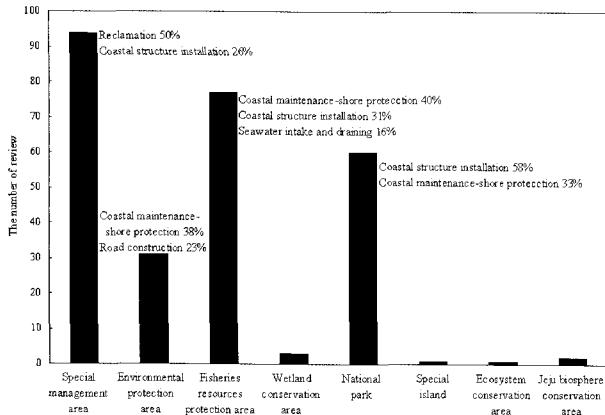


Fig. 8. Coastal utilization status in marine regulation area.

특별관리해역은 대부분 항만으로 이용되는 특성상 항만·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시설물 설치가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74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 건수를 나타내었는데, 완도·도암만, 진동만, 천수만과 가막만에서 각각 24건, 14건, 13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연안이용형태는 수산물 수송·양육 편의, 침식방지 및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호안정비가 40%로 가장 커졌으며, 방파제, 물양장 등 공작물 설치가 31%, 육상 양식장의 해수공급과 관련된 취배수가 16%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공원에서도 60건의 연안이용이 계획되었는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려해상과 다도해국립공원이 각각 13건과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공작물설치가 58%, 호안정비가 33%로 나타났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호안정비 및 도로공사가 우세하게 나타나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3.2.7 검토협의 검수의 월별 변화

해역이용협의시 검토기관으로 검토요청되는 건수의 월별 변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2007년은 4-25건의 범위로 11월에 최대를 보이다가 「해양환경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2월에 최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해역이용협의제도가 점차 인식되고 본격화면서 협의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8년은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역이용협의에는 대부분 간이부분이 차지하므로 검토기관의 검토과부하가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안정적 제도운영과 효율성을 위해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이 2008년 12월에 시행되면서 간이해역이용협의 부분은 상당하게 협의기관 자체에서 검토하여 검토요청되는 건수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해역이용협의량 자체가 증가되고 또한, 간이부분이라도 좀 더 엄밀한 검토를 위해서 검토기관으로 협의요청되고 있는 건수도 상당한 설정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전문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원적 성격이 강한 간이부분은 협의기관 자체에서 서류와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협의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인력 및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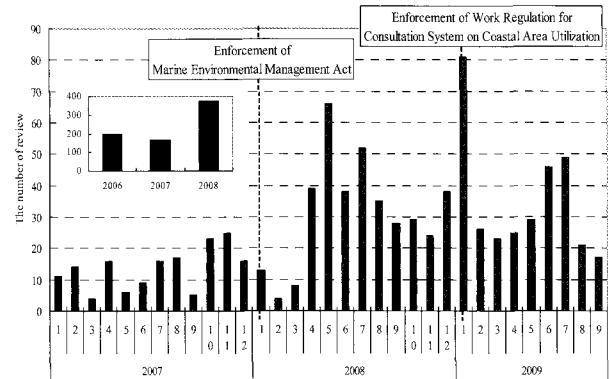


Fig. 9. Monthly changes of statements review in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3.3 해역이용협의제도 개선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크게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3.1 제도운영 및 정책적 측면

첫째,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량과 검토량에 대응하는 전문인력과 제원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기관에서는 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는 전담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협의제도의 주관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 검토기관으로 검토요청할 사항이나 검토의견을 취합해서 처분기관으로 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자식과 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처분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업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에 의해 구비서류의 명확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검토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해서 협의기능을 수행하려면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간이해역이용협의와 같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협의서류는 전문적인 과학적 검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요구 및 협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협의기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능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토의뢰시는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적정 서류와 공문이 검토기관에 적기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검토기관에서도 외부 120

명의 분야별 검토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토되는 사안에 대한 제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리고 학술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해서 정책측면에서 일부 괴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절차의 이해를 통한 적정 검토의 생산이 중요하다. 단순한 협의서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헌 및 선진사례를 연구해서 협의서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제시하는 것도 정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검토강화를 위해서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점이 불명확하여 대부분 평가서 작성단계에서 이루어지고 평가서의 내용을 협의서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협의제도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따른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공유수면 이용의 처분적 성격이 강한 해역이용협의를 환경영향평가초안요청 전에 완료를 해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이것을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를 제외하거나 제출서류를 간략하게 하는 방안과, 또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들을 때(이후 해역이용협의절차 생략), 단순한 의견수렴 차원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승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등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관리 주무부처의 협의·검토사항을 저해시키지 않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두 제도의 취지와 특성을 살리면서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이므로 해역이용협의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흡수할 경우 해양부문의 의견이 환경부에서 여과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주무부서의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제도는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충분히 살리되, 중복성과 같은 문제는 협의절차나 자료사용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부문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환경관리법」에 일원화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박, 2007). 특히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에서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역이용협의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서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매립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승인 후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반영고시결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협의대상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와 환경영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밀하게 정비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협의대상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법」 상 제5조제1항에서 1호인 공작물 설치 관련과 7호인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등이 누락되어 있고, 이러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대부분 간이해역이용협의로 해석해서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준설사업에서 항로 등의 유지준설일 경우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과 준설퇴적물이 해사토일 경우 준설과 해사채취의 구분이 매우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준설규모가 크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간소화를 위해서 현 규정의 문제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준설행위도 면적이 10만m² 또는 준설량이 20만m³ 이상일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으로 구분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안해역에서 환경기초시설에 의한 하·폐수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과 유사한 행위가 육상 양식장 등의 배출수 문제인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수 인배수관의 지름에 따라 협의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는데(400mm 이상의 경우 일반협의), 규모미만의 관을 여러 개로 구분해서 협의할 경우 기준적용이 모호하고,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중요한 점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배출량에 따른 협의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제주지역 사례와 같이 지자체별로 오염배출기준을 설정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역이용협의의 사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처분기관이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국토해양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사업의 추진유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협의와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사한 행위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처분적 내용과 이력에 대한 정보는 정책결정에 직결될 수 있는 검토의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처분에 대한 환류시스템의 정비와 이행이 요망된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의 하나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경우 단순한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과정에서 평가한 내용이 적절했는지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 합리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과 연계해서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체계적인 지침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시 해양환경영향조사기준이 매립면적 15천m²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해양환경영향이 경미한 점·사용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사업시행 중 반기별 1회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은 그 행위특성상 환경영향이 크므로 소규모매립을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이해당사자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도상에 보완·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일 경우 의견수렴 절차가 있지만, 준설토 해양투기

등 해역이용협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해서 공사기간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등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점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기관에서 이해당사자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간담회 등을 이용해서 사업의 설명 및 대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3.2 협의서 작성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

첫째, 평가의 제반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 전문대행기관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인력, 경험, 규정파악, 자료확보에 따른 협의서의 질적 차이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업자 주체주의 측면의 평가현실에 따라 그 영향결과가 축소되거나 단순한 조사결과의 제시로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협의서에 제시한 데이터의 객관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비교 검토를 이행하고, 제도적으로는 신뢰성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구축해서 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실 협의서에 대한 판정 지침을 도입해서 패널티를 제공하는 등 엄격한 평가관리에 의해 해역이용협의서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고 이해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상당하게 내재된 사업의 경우에는 신뢰성있는 진단과 정책결정 연계조건하에 평가의 공탁제를 신중하게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서 작성에 관한 항목과 방법 등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업유형별로 주요 환경영향평가사항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규정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규정을 참조하되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모든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일관성과 합리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업 유형별로 중요평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즉, 해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행위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평가 요소와 적정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점평가사항은 실제적인 조사평가를 엄밀하게 수행하고, 일반항목에 대해서는 문헌인용 및 간략한 평가를, 그리고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평가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하거나 관련 없는 조사평가를 지양할 것이며, 협의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보완되는 일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평가제도상의 스크리닝과 스코핑에 준하는 방안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스크리닝과 스코핑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 장점을 현 규정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영향평가시 동일 영향권과 누적 영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과학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진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안마다 그리고 검토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해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영향권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기 연안이용의 시·공간적 영향범위가 어떠할 때 누적영향을 고려할 지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나, 공통적인 접근기준, 예를 들면, 유속의 변화, 부유사화산, 침·퇴적의 변화 등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검증과정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신뢰성있는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분야 중 예측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조사 및 모델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이 등, 2008b). 향후 어떤 한 지역에서의 점·사용과 매립의 규모와 시간에 대한 적절한 연안이용지수를 개발해서 누적 연안개발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적 지표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안선 목표관리제 등도 유용한 수단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해역이용협의서 중 협의비율이 많은 간이부분은 전문적인 평가기관으로 작성의뢰를 하지 않고 대부분 처분기관 또는 민간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간소화된 현 규정에 의거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면 협의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지나친 간소화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현장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검토유형과 연안이용특성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협의유형은 공유수면 매립보다 공유수면 점·사용이 우세하며, 점·사용형태는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매립은 산업단지(공장부지)조성, 항만·여항개발과 도로 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소규모 매립은 매립관련 협의의 약 22%로 분석되었다. 사업지역은 서해가 52.8%, 남해 38.8%, 동해 5.5% 비율로 나타났고, 점·사용은 서해에서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2008년에 비해 2009년도에 간이해역이용협의서의 비율이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검토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주요 보완 요청된 이용행위는 준설로 해양투기와 매립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설과 해수 취배수가 3건, 그리고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가 2건으로 나타났다. 협의기관별 검토의뢰 수는 2008년에는 대산청과 마산청, 2009년의 경우에는 군산청, 목포청, 인천청과 평택청이 많았다. 과학적

인 전문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원적 성격이 강한 간이부분은 협의기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매립은 II등급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에서의 연안이용 분석결과, 시화호·인천연안을 중심으로 한 특별관리해역이 9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항만·여항 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시설물 설치가 우세하였다. 완도·도암만을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70건 이상의 많은 이용행위가 나타났는데, 수산물 수송·양육 편의, 침식방지 및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호안정비가 40%로 가장 커으며, 방파제, 물양장 등 공작물 설치가 31%, 육상 양식장의 해수공급과 관련된 취배수가 16%로 나타났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지역에서는 공작물설치가 58%, 호안정비가 33%로 나타났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환경영평가는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논의하였는데,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역량 강화,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해소 및 실효성 강화, 협의대상사업의 타당성 확보, 사후관리의 합리성, 사업 유형과 해역특성을 고려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평가의 제반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RP-2009-ME-060)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현

- [1] 국토해양부(2008a), 해양환경관리법.
- [2] 국토해양부(2008b),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3호.
- [3] 국토해양부(2008c),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4호.
- [4] 국토해양부(2008d),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178호.
- [5] 국토해양부(2009e),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pp. 661.
- [6] 박수진(2007), 해양부문 환경영평가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월간 해양수산 통권, 270, pp. 18-36.
- [7] 이대인, 엄기혁, 권기영, 김귀영, 윤성순, 장주형(2008a),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의한 연안이용분석,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97-103.

- [8] 이대인, 엄기혁, 김귀영(2008b), 연안이용 및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의제도 개선방안, 한국수산학회지, 제41권 제5호, pp. 399-404.

- [9] 이대인, 엄기혁, 김귀영, 장주형(2008c),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발전방향,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1권 제1호, pp. 55-62.

원고접수일 : 2009년 09월 03일

원고수정일 : 2009년 10월 16일 (1차)

: 2009년 11월 09일 (2차)

제재확정일 : 2009년 12월 24일